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2, 2024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상호합의절차(MAP)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2023년 통계

2024년 11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상호합의절차(MAP)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조세 확실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세무당국에 MAP 및 APA Awards 를 수여하였습니다.

OECD가 수여하는 MAP 및 APA Awards 는 총 6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tegory 1 – MAP 사례 평균 처리 시간 평가 (Average time to close MAP cases)
- Category 2 – 오래된 분쟁 해결능력 평가 (Age of Inventory)
- Category 3 – 사례 처리 효율성 평가 (Caseload Management)
- Category 4 – 국제협력 성과 평가 (Co-operation)
- Category 5 – 조세분쟁해결 성과개선 평가 (Most Improved Jurisdiction)
- Category 6 – 분쟁예방 우수 관할권 평가 (APA Award for Focus on Dispute Prevention)

한국은 이전가격 MAP 사례 대비 APA 사례 비중이 가장 높은 관할권을 평가하는 Category 6 부문에서 일본(1 위)과 싱가포르(2 위)에 이어 3 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MAP 신청 사례 통계

MAP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나 부당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MAP 신청 건수(미처리 사례)는 수년간의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처리된 사례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규 접수된 사례는 2022년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평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기에 따른 구분*	2023년 초 기준 미처리 건수	신규접수	합의 종결	2023년 말 기준 미처리 건수
2016년 1월 1일 또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 가입 연도 이전에 접수된 사례	1,042	0	213	813
2016년 1월 1일 또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 가입 연도 이후에 접수된 사례	5,413	2,336	2,388	5,362

*2016년 1월 1일 또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 가입 연도 이후에 접수된 사례는 공통 시작일을 사용한 합의된 방법론에 따라 집계되며,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 간 모든 MAP 사례가 중복으로 집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APA 신청 사례 통계

OECD에서 발표한 APA 통계는 APA 신청현황과 처리소요시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별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관할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023년 글로벌 APA 신청건수는 증가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미처리된 APA는 총 4,080건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PA가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3년 초 기준 미처리 건수	2023년 신규 접수	합의 종결: 승인 건수	합의 종결: 거절 건수	합의 종결: 기타 건수	2023년 말 기준 미처리 건수	APA 승인 평균 소요 기간 (개월)
3,919	1,136	860	15	100	4,080	36.79

EU: 공시용 국가별보고서(CbC) 양식 업데이트

2024년 10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공시용 국가별보고서(CbC) 지침의 적용을 위한 표준 서식과 전자 보고 체계를 규정한 업데이트된 시행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6일까지 진행된 공공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소폭 수정되었으며,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정보에 대한 공시 허용:** 보고 대상 그룹은 텍스트나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 및 활동 목록:** Section 3에 해당하는 목록에는 자회사만 공시하며 기타 사업장(자회사 형태가 아닌 사업장, 고정 사업장, 또는 영구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필수 요소의 선택적 공시:** Section 5에 해당하는 비필수 요소에 대한 내용 중 자산, 자본, 매출 비율, 보조금 등은 "추가 분류 요소 목록"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상기 수정사항은 2024년 10월 18일 회계지침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제목: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울산항 일원에서 상업용 에너지저장시설을 구축해 석유제품의 하역·인수·저장 및 기화·송출·재선적 등의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세지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임

- A법인은 오일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쟁점외국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 국내에 사무소, 지점, 영업장, 작업장, 공장, 창고, 감독활동 수행장소, 상주직원, 고용인, 계약권한을 가진 자 등이 없이 국내 정보수집 및 국내 보세구역의 물품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임직원들이 국내로 출장 오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

- 쟁점외국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위치한 A법인 소유의 석유저장탱크로 반입(국내외 정유사들이 용선한 선박 등을 통해 석유저장탱크로 반입) 및 보관하였다가

- 쟁점외국법인의 블렌딩 또는 반출 요청에 따라 저장 중인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국외 반출하는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쟁점계약 체결과정 및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 ① A법인과 쟁점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쟁점계약 체결
- ② 쟁점계약에 따라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쟁점외국법인에 석유제품 보관, 입출하, 탱크간 이송 및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보관료 및 블렌딩 서비스료)를 지급 받음
- ③ 블렌딩 서비스에서의 석유제품 간 블렌딩 비율 등 A법인이 제공하는 위 서비스들은 모두 쟁점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A법인은 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음
- ④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 외에도 다른 외국법인과도 A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짐

2)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법인과 석유제품 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위 싱가포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3) 회신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03 관세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 방법(인도 관세법 부분개정 포함)

1. 개요

한-인도 CEPA 협정의 경우에도 다른 FTA 와 마찬가지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그 절차는 다른 FTA 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며, Form I 라는 별도의 서식도 작성하여야 함. 인도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인지하고 관세법 부분개정을 통해 향후 발급절차를 간소화 시킬 가능성 열었음. 아래에서는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준비 서류와 함께 인도 관세법 부분 개정 내용을 정리함.

2.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 방법(C/O, Form I 발급 방법)

(1) 수출자 등록

- 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회원가입 및 수출자 등록 신청이 필요함.

(2)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 근거서류 준비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원산지 판정에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 CTH, CTS), 부가가치기준(RVC)이 있음. 한-인도 CEPA에서 주로 적용되는 결정 기준은 '결합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임.
- 충족 근거서류는 아래와 같음.
 - BOM(원재료 명세서, Bill of Materials)
 - 제조공정도
 - 각 원재료의 소요량, 단가정보
 - 각 원재료의 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물품의 가격

(3)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원산지판정 근거서류
 - 수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 ⑧ 수출신고필증
 - ⑨ B/L(선하증권)

(4) Form I 작성

- 수입자는 인도의 CAROTAR 2020(원산지관리강화규정,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에 따라 제품 수입 시 인도 세관에 FORM I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실무적으로 인도 수입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FORM I 서류 내 일부 내용에 대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FORM I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자/수입자 정보
 - ② 원산지 기준 충족 정보: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 공정 요건 충족 여부
 - ③ HS Code
 - ④ 원산지 증명서 세부 사항

3. 인도 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Proof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뜻하는 'Certificate of Origin'이 'Proof of Origin'으로 변경되었음. 인도 정부는 원산지 증명서 만이 아니라 자기발급(Self-Certification) 방식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하겠다는 뜻에서 'Proof'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밝혔음. 이는 여러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 관련 협정에서 자기발급 원산지 증명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 향후 인도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의 '자기발급'과 관련된 무역 협정을 맺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2) Issuing Authority (발급 권한)

기존에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기관에만 한정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역 협정에 따라 지정된 개인'도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음. 즉, 특정 자유무역협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개인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것임.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에는 기관 발급이 명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한-인도 CEPA 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나, 향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 '자기발급'이 포함된다면 동 개정안이 적용 될 것이라고 설명함.

4. 시사점

비록 이번 인도의 관세법 부분개정은 한-인도 CEPA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인도 정부가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의 복잡함을 인지했다는 의의가 있음. 이로서 향후 한-인도 CEPA 개정 또는 인도와 체결하는 신규 Mega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복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u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